

교원인사위원회 규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·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기능)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2012.07.21)

1. 총장이 정교수, 부교수,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2.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3.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인사위원회는 부교수 이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
2. 학생의 교수·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3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

제 3조(조직)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을 제외한 교무위원과 정교수 1인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교무위원은 임기기간으로, 정교수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(개정2014.08.01.)

제 4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

제 5조(회의소집)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,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조(회의록 작성)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 7조(간사 등)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 8조(운영세칙)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 한다.